2007.11.18. 발표원고요약문

韓國에서의 傳統法 硏究의 現狀

- 朝鮮王朝時代의 法制度를 中心으로-

文竣暎(釜山大學校 法科大學)

시작하며

韓國에서는 10 년전 서울대 崔鍾庫 교수(법사상사)가 '동아시아 普通法'이라는테마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중세 유럽의 'ius commune'의 의미에서 동아시아에 보통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 法典化(Codification), 儒敎法文化, 鄕約과 村落法, 法學 네 가지를 구성요소로 거론하였다. 아직은 동아시아 삼국 사이의 법문화 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試論的 연구라고 할 것이다. 韓國의 法史學界에서는 동아시아법 비교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연구기반이 취약하고, 韓國의 전통법질서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나 개념이 충분히 무르익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도 中國 및 日本과의 비교연구는 유익하다. 이 글에서는 이른바 '전통사회'라고 할 수 있는 朝鮮王朝時代에 한정하여 韓國의 傳統法制에 관한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비전문가이지만 필자 나름의 견해를 덧붙여보기로 한다.

1. 韓國에서의 儒敎的 法文化論: 非法的 文化論과 儒敎的 法治主義論

韓國에서도 1960 년대까지는 韓國의 전통법문화는 非法的(alegalistic)이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다. 예컨대, 처벌 중심의 전통법 규범, Max Weber 가 말하였던 家産制

국가, '實質的 비합리성'의 正義觀, 正義, 眞實, 審判보다는 平和, 調和, 調停를 선호하는 것 등이, 非法的인 삶을 형성하고, 결국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的 法史學은 1960 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식민지시기의 停滯性論 그리고 서구중심주의에 입각한 傳統法否定論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로 여겨졌다.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면서 유교법문화, 韓國 전통법문화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근래에는 법사회학자 중에서 조선후기에 "一定한 近代的 要素들"이 발견되고 "一定한 權利意識"이 成長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朝鮮時代의 법문화가 紛爭에서 法의 動員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法的'이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一定한"이라는 수식어에는 주저함과 모호함에도 담겨있다. 단순히 西歐=近代的인 것과 유사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회의법질서나 법문화의 構造的 特質을 課題가 놓여있는 것이다

2. 朝鮮왕조, "統一法典의시대"

저명한 한국법사학자인 朴秉豪 교수는, 朝鮮時代의 法制史的 特徵으로서 統一法典의 制定과 繼續的인 編纂 및 中國의 大明律의 包括的 繼受에 의한 法治主義 統治라는 점을 들고, 이 시대를 "統一法典의 시대"로 命名하였다. 이것은 高麗末의 混亂을 딛고, 新儒學의 理念에 따라 政治.社會制度를 再編하려고 한 建國主導勢力의 企劃의 결과였다. 國初의 經濟六典(1397)과 續典에 이어, 1 세기에 걸친 작업을 통해 '周禮에 뒤지지 않는 萬代의 成法'임을 표방하는 經國大典(1484)이 완성되었다. 이후 大典續錄(1492), 大典後續錄(1543), 經國大典註解(1555)이, 후기에는 受教輯錄(1698), 新補受教輯錄(1739), 續大典(1746), 大典通編(1785), 大典會通(1865)이 편찬되었다. 이중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과 같은 大典類를 通稱하여 "國典"이라고 불렀다. 大典들은 朝宗成憲이라는 最高法의 지위를 가졌다. 法典은 手教(王命)으로 이루어진 事例法과 立法의 集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法典의 編纂은 世祖, 英祖, 正祖, 高宗과 같이 강력한 王權을 지향한 군주의 권력과 의지로 뒷받침되었다. 즉 國典의 編纂은

정치적 차원에서, 集權性과 君權이 확장되는 朝鮮國家의 歷史的 性格을 反映하고 있다. 刑事法의 경우, 太祖의 卽位敎書를 통해 實務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大明律直解를 刊行하고 刑事規範을 大明律로 收斂해 나간 끝에, 經國大典 刑典의 “大明律을 쓴다(用大明律)”는 규정이 정립되었다. 하지만 大明律의 모든 규정이 ‘문자 그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해석을 통하여 또는 다양한 특별규정을 창출해나갔다.

3. 傳統社會와 訴訟

(1)국가의 소송 대책: 無訟과 無寃

朝鮮時代의 統治者들은 이념적으로 無訟社會를 지향하였다. 理想과 現實 사이에는 乖離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高麗末부터 田土訟과 奴婢訟이 激增하였다. 정부는 權門勢族의 牽制, 民生改革, 良人과 稅收確保를 위하여 각종 裁判機關을 설치하였다. 朝鮮初 訴訟積滯가 심해지자, 소송을 根絶시키려는 斷訟政策을 폈다. 특정 시점을 지나 제기된 소송을 受理를 하지 않거나, 是非가 분명하지 않은 奴婢訟에서 原.被告가 奴婢를 절반씩 나누어 갖게 하거나(奴婢中分法), 單審制 등이 도하였다. 하지만, 모두 失敗하였다. 人爲的 斷訟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伸冤抑)”는 것이 강력한 반대논거였다. 타협책으로 呈訴期限을 정하는 過限法, 세 번의 소송에서 두 번 패한 자는 다시 소송하지 못하게 하는 三度得伸法, 裁判廷에 출석하지 않는 當事者에게 敗訴의 부담을 지우는 親着法 등이다. 16 세기에 들어서면, 소송절차와 재판법규를 정리한 詞訟法書들이 등장한다. 詞訟類聚(1585)가 유명하여, 朝鮮後期에는 그것을 증보한 決訟類聚(1649), 決訟類聚補(1707)가 刊行되었다. 또한 儒胥必知와 같은 書式集이 널리 활용되었다. 續大典, 大典通編에서는 訴訟法規가 대폭 보강되었다.

(2) 裁判制度

이 時代의 裁判은 대략 刑事裁判에 상응하는 것으로 獄訟, 民事裁判에 상응하는 것으로 詞訟으로 구분되었다. 糾問主義的 節次로 진행되는 獄訟과 달리, 詞訟은 當事者主義的 性格을 가졌다. 原告가 관청에 所志(告狀)을 제출하면, 관청이 그에 대한 처분인 제김(題音)을 所志의 여백에 써준다. 대개는 '피고를 데려오라'는 내용이다. 재판정에 출두한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承服하겠다는 始訟다짐(拷音)을 하면, 訴訟이 繫屬하여 審理로 넘어간다. 양 당사자가 남김없이 변론과 증거제출을 하였다고 생각되면, 서로 합의하여 連名하여 판결을 신청하는 決訟다짐을 하고, 관청이 판결을 내린다. 勝訴者가 作紙(수수료에 상응)를 納付하면 正式 判決文인 斷決立案 내지 決訟立案을 내준다. 이는 최초의 所志부터 모든 서류와 진술을 기입하고 判決을 記載하는 식으로 작성된다. 田宅訟, 奴婢訟 이외의 雜訟은 訴狀末尾에 判決事項을 적어주는 立旨로 대신하였다.

16 세기까지는 中央의 刑曹, 漢城府(田宅訟에 대한 全國的 管轄權), 掌隷院(奴婢訟 管轄)을 무대로 訴狀을 대신 작성하거나 소송기술을 가르쳐주는 일을 업은 삼았던 外知部가 존재하였다. 국가는 이들을 '無賴之徒'로 단정하고, 철저히 抑壓하는 政策을 취하여 專門的 職業層으로 成長할 수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동시대의 중국, 일본의 訟師, 幕友, 歇家, 公事宿, 扱人와 같은 직업층이나 시설이 발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의 內濟와 같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도 공식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3) '民俗好訟'과 紛爭의 樣相

傳統社會의 人民이 訴訟을 忌避하는 性向이 있다는 주장은 현재 거의 說得力을 잃었다."民의 習俗이 訴訟을 좋아하여 重要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呈訴한다"(民俗好訟, 勿論呈訴之緊不緊). 訟事에 관한 한 일반 小民이나 朝官, 宗親이 따로 없었고, 骨肉間의 爭議도 不辭하였다. 訴訟의 蔓延, 民俗好訟의 風潮를 가지고 當代人의 法意識을 近代的 意味의 그것과 同一視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이익을 위해 소송을 마다하지 않고 法을 動員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朝鮮後記에는 소송이 일반화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一例로 郡衙의 民狀接受臺帳인 民狀置簿冊을 보면, 郡守가 한 달에 187 건, 248 건, 164 건의 사건을 受理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중 賦稅問題에 관한 것이 47%고, 相鬪, 즉 人民間의 爭訟이 40.6%였다.

朝鮮時代의 3 大 民事紛爭은 奴婢訟(朝鮮前期), 田宅訟(朝鮮中期와 後期), 山訟(朝鮮後期와 韓末)이었다. 朝鮮 後期의 奴婢訟에서는 노비가 주체가 된 身分解放的 樣相의 奴婢訟이 많이 나타난다. 朝鮮 後期 들어 墳墓所有者들이 風水地理說의 개념을 빌려 明堂을 찾거나 附屬土地의 境界를 여러 가지 名目으로 확대하여 林野를 廣占하면서, 山訟(墓地에 관한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山訟은 先祖를 모실 묘터와 명당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성격 외에, 묘지를 명목으로 所有地나 經濟的 資源을 확대하거나, 公利地를 占據하여 土地所有權을 獲得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일종의 公有地 分割競爭이다.

4. 土地所有權 保護의 特徵

韓國의 法史學者들은, 조선시대(특히 후기)의 土地所有權法制는 權利本位로 構成되었고, 民田主의 法的地位는 명백한 私的 所有權者로서, 前近代的 所有權으로서는 世界史에 類例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한 絶對性과 觀念性을 具備한 自由所有權이었다라고 보는 傾向이 强하다. 물론 오늘날과 달리 所有(‘所有’, ‘己有’, ‘有’)와 占有(‘執持’, ‘次知)는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近代的 所有權’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의 政策(開墾奬勵, 稅收擴大, 耕作者 保護 등)이 現實的 土地利用을 重視하여, 현실적으로 토지를 경영.관리, 즉 執持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었다.

遊休地를 開墾한 자와 土地所有者 사이에 權利關係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經國大典은 有主地라도 ‘3 년이 지난 陳田은 官에 申告하면 耕作을 許容한다(過三年陳田 許人告耕)’고 하였다. ‘경작을 허용한다’는 문구의 해석과 이 규정을 활용한 脫法行爲를 우려하여, 1556 년의 受敎에서 ‘永遠이 주는 것이 아니라 本主人이 돌아올 때까지 잠시 耕作을 許容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陳田을 開墾한 후 田主가 돌아와 다투면 收穫量의 1/3 은 田主에게, 2/3 은 起墾者에게 주고, 耕植한 지 10 년이 지나면 均分을 許한다는 규정이 제정되었다(大典通編 戶典 收稅). 법에 의해 土地賃借關係가 설정되는 것이다. 비슷한 취지가 서울의 住宅의 垈地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軍役을 지는 자가 耕作하는 土地는 所有의 대상이라기보다는 軍役의 대가로 준 耕作地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朝鮮後期의 토지제도를 기본적으로 私的 所有權이 강하게 보호받으면서도 또한 사적 소유개념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유형의 토지제도들이 共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조선의 경우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一物一權的인 私的 土地所有權 槪念이 발전하고 一般化되었다. 舊韓國期 不動産法을 調査한 日本人調査者들은 韓國의 土地法이 로마법적 所有權에 屬하며, "土地에 관하여 所有權, 小數의 他物權, 債權的賃地權을 認定하고 있다"고 判斷하였다. '業'이라는 낯선 개념과 遭遇할 수밖에 없었던 中國이나 臺灣과는 狀況이 달랐던 것이다.

5. 鄕村自治秩序와 法

(1) 朝鮮前期의 在地兩班의 鄕村支配: 鄕案과 鄕約

朝鮮前期 郡以下의 行政에서 守令을 補佐하기 위하여 鄕所(留鄕所, 후의 鄕廳)가 설치되었는데, 鄕所는 鄕吏의 監督, 지역의 風俗糾察, 賦稅業務 등을 擔當하였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兩班層이 座首, 別監 등 鄕所의 任員이 되어 地域社會를 掌握하여나갔다. 그 지렛대가 鄕案과 鄕約이었다. 鄕案은 邑單位로 作成된 재지양반들의 名單이었고, 入錄을 위해 엄격한 資格審査가 이루어졌다. 鄕案에 오른 兩班만이 鄕任으로 選任되었다. 鄕約의 경우, 초기에는 士林派인 地方官들이 主導하여 中國의 呂氏鄕約을 모방한 것들이 普及되었다가, 점차 朝鮮的 鄕約을 특징을 보여주는 鄕約들이 나타난다. 鄕約은 面單位로 조직되고, 鄕約내의 전반적 업무는 契長, 有司(또는 約正, 直月), 士族들의 會議體인 士類會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契長이 自治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 業務들에는 정기적인 講信會 개최, 善惡籍에 따는 論罰과 褒奬, 30 세 이하 非文者의 教育 등 외에, 爭訟을 辨決하고 約法을 범한 자를 處罰하는 權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지양반층은 향약기구의 裁判權, 處罰權, 約法制定權을 통해 鄕村民을 지배하였다.

(2) 朝鮮 후기의 변화

朝鮮後期에 들면서 兩班中心의 鄕村支配秩序가 動搖하였다. 受領權의 强化에 隨伴된 自治力의 감소, 中人.平民層의 進出과 鄕約機構의 分裂이 나타났다. 鄕所의 地位가 格下되고, 鄕約의 施行과 人事에 守令의 介入하면서, 鄕藥機構는 風俗糾察만 담당하거나 守令의 政令을 頒布하고 賦稅를 請負하는 機具로 轉落하는 現狀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적인 처벌권, 褒賞權도 縮小되거나 사실상 守令에 歸屬해버린다. 향약기구의 쇠퇴의 배후에는, 또한 小農經濟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民의 成長이 있었다. 17,8 세기가 되면 面里制가 강화되어, 面里의 組織은 守令의 閤下로 編入된다. 庶民중 成長한 富民들도 面里制 運營에 參與한다. 香徒, 村契, 두레와 같은 독자적인 農民組織이 결성되었다. 鄕約.洞約 등에서 下民의 地位가 强化되고 任員에 進出하였다. 兩班과 民의 葛藤이 심화되면 洞契가 上契, 下契로 나뉘기도 하였다. 在地兩班은 鄕約이 아니라 血緣的 單位組織인 門中契, 族契 등으로 支配基盤을 옮겨갔다.

(2) 和解 또는 自治的 紛爭解決?

朝鮮時代의경우 관이 정식 재판절차 외에 當事者의 和解나 自治的 紛爭解決을 유도하는 것을 制度化시켰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中國 明淸代의 里正, 里老人의 재판, 日本의 內濟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유교적 관념상 실무에서 화해나 송사를 멈추는 일을 선호할 수 있었지만, 국가가 나서서 和解를 制度化시키거나 勸奬하는 일은 찾기 힘들다. 조선시대의 각종 法書에서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鄕村內의 自治的 분쟁이 朝鮮시대 재판에서 어떤 위상에 있었는가? 향약기구의 자치적 쟁송처리나 처벌권, 朝鮮後期의 牧民書와 民狀置簿冊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령이 향약기구나 洞里의 任員에게 분쟁해결을 위임하는 내용의 기술 등을 근거로 학계에서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각종 분쟁이나 범죄 행위는 지역사회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권장되었고, 이는 敎化에 입각한 共同體內 處理라는 유교적 통제 이념이 개입한 결과”라고 평한다. 그러나 역시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勸勉한 흔적은 찾기 힘들다. 또한 里正.里老人의 裁判을 거치지 않고 官에 直訴하는 것을 越訴로 처벌하였던 中國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牧民書의 기술을 보면, 事案의 성격에 따라 守令의 對處方法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爭訟 一般에 관하여 一律的으로 鄕村의 自治的 解決에 맡기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른바 ‘自治的 解決’의 성격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鄕約은 재지양반층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향촌질서의 지배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다. 중앙의 관료기구가 아직 지역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가운데, 향소와 향약을 매개로 재지양반들이 연합한 향촌지배가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모습이다. 中央의 執權性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일반 民人이 성장하면서, 洞과 里를 단위로 한 村落共同體가 성장하면서, 기존의 향약기구의 자치력이 쇠퇴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것이다.

6. 儒敎國家 成熟期의 國王과 司法

韓國의 한 經濟史學者는 朝鮮後期의 경제체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18 세기 朝鮮의 경제체제는 集約的 小農經濟와 道德經濟的 再分配經濟를 두 軸으로 하고 있었다. 이 재분배경제는 比較史的으로 보아 매우 수준 높은 ‘道德經濟’(moral economy)로서, 君主가 모든 人民의 保護者로써 인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여 그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指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조선이

專制君主의 國家(日本의 領主制와 對比되는 면)이자 상대적으로 小國(中國의 準聯邦主義的 semi-federalistic 官僚國家와 대비되는 면)인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이 말이 朝鮮이라는 유교국가에서 군주가 지향하는 統治像을 簡明하게 설명해준다고 생각한다. 朝鮮前記의 世宗이 聖君으로 推仰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 18 세기 英祖와 正祖라는 독특한 個性을 가진 君主의 時代에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이들은 欽恤, 抑强扶弱의 理念 아래 私敵 刑罰(私門用刑)을 금지하고 公刑罰權을 강화하고 刑政을 整備해 나갔다. 正祖가 25 년간(1775- 1799) 심리한 형사사건(거의가 死罪事件이다)을 기록한 審理錄을 보면, 총 1,112 건의 사건 중 실제 사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36 건(3.2%)이다. 減刑과 釋放의 理由를 보면, 正祖가 의심스러운 사안은 가볍게 처리한다는 疑輕[罪疑惟輕]의 原則을 철저히 따르고, 또한 三綱五倫의 儒教倫理를 앞세워 處決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王法은 때에 따라 調整할 수 있으나 天倫은 永遠히 變치 않는다. 法은 굽힐 수 있어도 倫理는 허물 수 없”기 때문이다.

영조와 정조가 堅持한 恤民과 無寃의 理念은 왕과 인민의 直接 疏通으로 具顯되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上言과 擊錚이다. 人民이 官署를 거치지 않고 國王에게 직접 所願하는 制度였는데, 上言은 文書로써, 擊錚은 북[鼓]이나 징[錚]을 쳐서 한다. 初期 中國의 登聞鼓制度를 본받아 申聞鼓制度가 施行되어, 16-17 세기 들어 점차 訴願事件의 범위가 넓어졌다. 正祖代에 오면 사건의 제한도 없어지고, 궁궐 밖에서 왕이 擧動할 때에 상언과 격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日省錄에 의하면, 정조는 재위 24 년간 무려 4,427 건의 상언.격쟁을 수리하였다. 이중 상언이 3,092 건(69.8%), 격쟁이 1,335 건(30.1%)이다. 유생과 평민이 제기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달한다. 상언.격쟁한 주제를 보면, 干恩(41.7%)>民隱(21.4%)>山訟(13.3%)>伸寃(13.4%)>立後(10.2%)이다.

정조는 朝鮮 유교국가가 낳은 위대한 군주의 전형이다. 그는 자신을 萬川 위에 비치는 밝은 달(萬川明月主人翁)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군주의 明德이 萬人에 똑같이 미치는 統治. 그래서

그의 통치이념을 韓國에서는 君民一體論(日本의 一君萬民論)이라고 하며, 서구의 啓蒙絶對主義와 비교하기도 한다. 앞에 본 조선의 '경제적 재분배체제'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정조대의 상언.격쟁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존의 사법시스템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개혁을 방기해버리는 것이었다. "법은 굽힐 수 있어도 윤리는 허물 수 없다"는 유교적 變通의 논리가 투영된, 變通의 司法이었다.

맺음말

'변통의 사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필자는 그것이 韓國의 전통 사법시스템이 中國과 日本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특징을 묘사해주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비단 정조와 같은 국왕의 실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조선의 사법시스템을 보면 재판과 결합된 부수적인 제도나 장치가 中國이나 日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정립 내지 분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어 中國과 일본의 향촌분쟁해결, 화해, 喧嘩兩成敗, 기타 소송관여 직업층의 존재 등과 같은 것은,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가의 의지에 의해 공식화되고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韓國의 경우 비슷한 것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딱 잘라 말하기 힘든 모습을 띠며 공식적 사법체계의 주변부에만 머물러있었던 것 같다. 斷訟과 無寃의 이념이 절충된 過限法(呈訴期限法)의 운영을 보면, 실체적 정의실현의 요구(伸寃)와 절차적 정의 실현의 요구를 절충한 느슨한 형태의 사법제도라는 분석이 있다. 詞訟의 기본틀도 전기와 후기에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요컨대, 朝鮮전기에 마련된 틀 외에 하위 시스템이나 부수적 장치들이 상대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터져나오는 인민의 소송에 대해 정조와 같은 군주는 직접 인민과 소통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기본적으로復舊的 성격을 가졌다. 소송이 만연한 사회였지만 소송을 법적으로 조직화시키는 동력이 미약하였다고 할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